

**2024년 제2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통계심사반(사전상담과) 통계심사원 채용공고**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통계심사반(사전상담과)에서
근무할 ‘통계심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가. 채용인원 : 총 2명

분 야	부 서	직종 및 등급	인 원
의료제품	사전상담과	통계심사원 라급	2명
합 계			2명

나. 담당업무

- 의료제품의 허가 심사 관련 임상시험에서의 통계 자료 검토
- 임상시험계획에서 통계적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상담 등 업무

다. 자격요건

구분		채용 인원	근무 지역	자격요건
분야	등급			
의료 제품	통계 심사원 라급	2명	충북 오송 (평가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관련 분야] ○ 통계학, 임상통계학, 의학통계학 등 유사 분야

라. 공통사항 및 우대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의약품·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2. 보수 및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원직(기간제)근로자

나.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4조(전보)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

다. 근무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 '24.12.31.까지(회계연도 기준)

*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

마. 보수수준(연봉)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24년 기준)
통계심사원	라급	29,400

* 급식비(매월 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 상여금 별도(6개월 이상 근무자)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기타

-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등 유연근무 활용 가능
- 셔틀버스 운행 (청주, 오송역, 조치원역, 세종↔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KTX, SRT 이용 수도권 출·퇴근 가능)

3.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

가.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서류 (필수제출)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석·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성적증명서(대학이상 최종학력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파일 기타첨부자료로 제출)
선택서류 (해당자 제출)	-어학성적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운전면허 제외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여부,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
- ** 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 시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
-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나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 학력·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 면접심사일(2024. 3.14.) 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주의사항

- 면접시험 시작시간 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나.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4. 2.14.(수) 10:00 ~ '24. 3. 6.(수) 23:00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분야 및 응시 등급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4.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시험(예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장소
서류전형	'24. 3. 8.(금)	-	개별(유선,문자)통보 및 우수인재채용시스템 게시
면접시험	'24. 3.14.(목, 예정)	별도 통보	-
최종발표	'24. 3.20.(수, 예정)	-	개별(유선,문자)통보 및 우수인재채용시스템 게시
근무시작일	'24. 3월 중	-	조정 가능

- * 접수 현황에 따른 연장 공고 시 일정 변경 가능
- * 상기일정은(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발표) 공고 일정 등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임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나.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신원조회 ·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에 따라 업무관련 분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금지됩니다.

제12조의2(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근로자 운영 규정」(훈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의약품·마약·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이하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라 한다)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삭 제>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김상요 주무관 ☎ 043-719-2917)

6.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녀 공통제출,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흰색바탕 사진파일 제출(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472픽셀)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17조제1항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